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 and Boundaries of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the Major

Yang-Hee Hong*, Jung-Mi Lee**, Hee-Sun Woo***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Suwon Women's University, Suwon, Korea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 Education, Suwon Women's University, Suwon, Korea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Suw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men'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0 Suwon women's college student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1, 201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oral health condition of the subjects, perception of both legal and illegal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medical personnel occupations by subject, and the reason why they thought dental hygienists are medical personn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frequency, percentage,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IBM SPSS VER 22.0. I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 of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major. Percent of 70 of the subjects perceived dental hygienist as a medical personnel, the opinions on the necessity were as follow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sues a license through the national examination role and dental hygienists assist the care of dentist. Therefore, clinical dental hygienists should be promoted to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so that the duties practiced by the dental hygienist can be matched with the legal practice.

▶ **Key words:** Dental Hygienists, Legal affairs,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Medical Technicians

[요 약]

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의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주제어:** 의료인,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전공별, 치과위생사

-
- First Author: Yang-Hee Hong, Corresponding Author: Hee-Sun Woo
 - *Yang-Hee Hong (hongyh@swc.ac.kr), Dept. of Beauty Art, Suwon Women's University
 - **Jung-Mi Lee (jmlee1122@swc.ac.kr), Dept. of Early Child Education, Suwon Women's University
 - ***Hee-Sun Woo (goseychell@swc.ac.kr),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20. 02. 13, Revised: 2020. 03. 06, Accepted: 2020. 03. 09.

I. Introduction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1994년 2년제로 운영되던 치과위생 교육이 3년으로 개편되었고, 2002년에는 4년제 치과위생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치과위생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꾸준히 교육의 질과 학문의 깊이를 높이고 있다[1]. 3년제 대학 54개교와 4년제 대학교 27개교로 총 81개교에서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있으며[2], 지난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치과위생학 교육계는 환경개선과 질적인 교육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교육 표준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의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중 유일하게 의료인인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종으로, 업무의 전문성, 의사-간호사 체계와 같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체계 차용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4].

1973년 의료기사법을 제정한 목적은 '의료 또는 치과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를 의료기사로 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의료기술자에 대한 대우와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5]. 이는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직종이 전문 분야별 기술을 취득한 의료전문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치과의료 발달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적 업무와의 차이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일탈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6].

현재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협업하고 있으며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등 다양한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위생사 업무의 본질은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 행위로서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7]. 김한나, 김계현의 연구보고서[8]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행위의 개념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3]. 또한, 2015년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된 부분에는 '치과위생사는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첨부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일부분 구체화 시켜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 지속적인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적 업무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9].

치과위생사는 3·4년제의 교육기관에서 졸업 학점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둘 다 합격하여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교부받는 전문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의 법적 업무 범위와 현재 임상에서 수행 업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구강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안전하게 치과진료 및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10].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공청회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여부에 대해 일부 임상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견해는 조사된 바 있으나, 사회실무학부인 유아교육과, 예술학부인 미용예술과, 보건식품학부인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Research subjects and methods

1. Research Subject

본 연구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기도 소재 모 여자 대학의 보건식품학부의 치위생과, 사회실무학부의 유아교육과, 예술학부의 미용예술과의 2학년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6

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180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2. Research Tool

학과별로 주관적 구강상태의 인식정도와 치과위생사의 인식정도를 기본적으로 파악한 후 학과별 대학생들의 의료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인 5종, 의료기사 등 6종으로 총 11종 중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학과별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9개(구강보건교육,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 인상채득, 불소도포,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임시충전, 방사선촬영,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와 법적 외 업무이지만 임상에서 많이 수행되는 업무 7개(구강검사, 충치 치료, 국소마취, 유치발치, Dressing, Stitch-out, 임시치관제작) 중에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가지 예시에서 본인과 가장 비슷한 의견에 1, 2, 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3. Statistical Analysis

연구대상자의 학과별 여대생들의 주관적 구강상태 인식 정도, 치과위생사 직업의 인식정도,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와 법적 외 업무의 인식정도, 의료인과 의료기사 중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SPSS Statics 22.0을 이용하였다.

III. Result

1. Subject's Percepti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by Subject.

연구대상자의 구강상태 건강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구강상태의 건강도가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동일하게 36.7%로 나왔으며,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55.0%로 가장 높았으며,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그렇다'가 45.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여 학과별로 구강상태의 건강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Subject's Percepti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by Subject

Item	N(%)		
	Early Childhood Education	Beauty Art	Dental Hygiene
Excellent	2(3.3)	1(1.7)	0(0.0)
Good	8(13.3)	13(21.7)	2(3.3)
Fair	22(36.7)	33(55.0)	22(36.7)
Poor	22(36.7)	13(21.7)	27(45.0)
Very Poor	6(10.0)	0(0.0)	9(15.0)
Total	60(100.0)	60(100.0)	60(100.0)

2. Occupational Perception of Dental Hygienists by Department

연구대상자들의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유아교육과와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안다'와 '잘 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61.6%, 91.7%로 나타났으나,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안다'와 '잘 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학과별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2. Occupational Perception of Dental Hygienists by Department

Item	N(%)		
	Early Childhood Education	Beauty Art	Dental Hygiene
Not at all	0(0.0)	1(1.7)	0(0.0)
Slightly	5(8.3)	13(21.7)	0(0.0)
Moderately	18(30.0)	28(46.7)	5(8.3)
Very	32(53.3)	17(28.3)	30(50.0)
Extremely	5(8.3)	1(1.7)	25(41.7)
Total	60(100.0)	60(100.0)	60(100.0)

3. Recognition of Legal Duties of Dental Hygienists by Subjects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학과별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와 치과방사선 촬영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외 교정용호선 장착 및 제거, 치면열구전색, 인상채득, 치석제거,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는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Recognition of Legal Duties of Dental Hygienists by Subjects

Item	N(%)			x ²	p
	Early Childhood Education	Beauty Art	Dental Hygiene		
Oral Health Education					
Y	57(95.0)	58(96.7)	59(98.3)	1.034	.596
N	3(5.0)	2(3.3)	1(1.7)		
Sealant					
Y	42(70.0)	39(65.0)	60(100.0)	22.336	.000
N	18(30.0)	21(35.0)	0(0.0)		
Scaling					
Y	56(93.3)	53(88.3)	60(100.0)	7.165	.028
N	4(6.7)	7(11.7)	0(0.0)		
Fluoride Application					
Y	55(91.7)	57(95.0)	60(100.0)	4.971	.083
N	5(8.3)	3(5.0)	0(0.0)		
Temporary Filling					
Y	39(65.0)	39(65.0)	58(96.7)	21.718	.000
N	21(35.0)	21(35.0)	2(3.3)		
Temporary and Filling Removal					
Y	41(68.3)	46(76.7)	55(91.7)	10.074	.006
N	19(31.7)	14(23.3)	5(8.3)		
Impression Taking					
Y	51(85.0)	48(80.0)	60(100.0)	12.615	.002
N	9(15.0)	12(20.0)	0(0.0)		
Bracket and Arch Wire Removal					
Y	41(68.3)	38(63.3)	54(90.0)	12.497	.002
N	19(31.7)	22(36.7)	6(10.0)		
X-ray Taking					
Y	50(83.3)	51(85.0)	5(88.3)	0.629	.730
N	10(16.7)	9(15.0)	7(11.7)		

4. Perception of Non-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s by Subjects of Researchers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학과별로 Stitch-Out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외 구강검사, 충치치료, 국소마취, 유치발치, Dressing과 임시치관제작은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5. Perceived Awareness of Medical Occupations by Subjects

연구대상자의 학과별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인 직종의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와 간호사는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산사의 경우는 학과별로 인지정도가 달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모두 인지하고 있어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5).

6. Reasons for Dental Hygienists by Department of Researchers

연구대상자 중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표기한 이유에 대해 1, 2, 3순위로 응답하게 한 질문에 유아교육과와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이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Table 6).

Table 4. Perception of Non-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s by Subjects of Researchers

Item	N(%)			x ²	p
	Early Childhood Education	Beauty Art	Dental Hygiene		
Oral Exam					
Y	54(90.0)	43(71.7)	44(73.3)	7.267	.026
N	6(10.0)	17(28.3)	16(26.7)		
Caries Treatment					
Y	33(55.0)	29(48.3)	13(21.7)	15.360	.000
N	27(45.0)	31(51.7)	47(78.3)		
Local Anesthesia					
Y	32(53.3)	34(56.7)	9(15.0)	26.469	.000
N	28(46.7)	26(43.3)	51(85.0)		
Deciduous Extraction					
Y	26(43.3)	25(41.7)	13(21.7)	7.613	.022
N	34(56.7)	35(58.3)	47(78.3)		
Dressing					
Y	56(93.3)	55(91.7)	38(63.3)	23.927	.000
N	4(6.7)	5(8.3)	22(36.7)		
Stitch-Out					
Y	39(65.0)	44(73.3)	33(55.0)	4.413	.110
N	21(35.0)	16(26.7)	27(45.0)		
Temporary Crown					
Y	39(65.0)	38(63.3)	54(90.0)	13.516	.001
N	21(35.0)	22(36.7)	6(10.0)		

Table 5. Perceived Awareness of Medical Occupations by Subjects

Item	N(%)			x ²	p
	Early Childhood Education	Beauty Art	Dental Hygiene		
Medical Doctor					
Y	60(100.0)	59(98.3)	60(100.0)	2.011	.366
N	0(0)	1(1.7)	0(0)		
Dentist					
Y	60(100.0)	59(98.3)	60(100.0)	2.011	.366
N	0(0)	1(1.7)	0(0)		
Oriental Medicine					
Y	58(96.7)	54(90.0)	58(96.7)	3.388	.184
N	2(3.3)	6(10.0)	2(3.3)		
Accoucheur					
Y	49(81.7)	42(70.0)	53(88.3)	6.458	.040
N	11(18.3)	18(30.0)	7(11.7)		

Nurse					
Y	58(96.7)	54(90.0)	58(96.7)	3.388	.184
N	2(3.3)	6(10.0)	2(3.3)		
Clinical Pathologist					
Y	47(78.3)	39(65.0)	12(20.0)	45.202	.000
N	13(21.7)	21(35.0)	48(80.0)		
Radiologist					
Y	53(88.3)	38(63.3)	8(13.3)	70.707	.000
N	7(11.7)	22(36.7)	52(86.7)		
Physical Therapist					
Y	54(90.0)	42(70.0)	9(15.0)	74.469	.000
N	6(10.0)	18(30.0)	51(85.0)		
Occupational Therapist					
Y	41(68.3)	37(61.7)	6(10.0)	49.152	.000
N	19(31.7)	23(38.3)	54(90.0)		
Dental Technician					
Y	38(69.3)	35(58.3)	4(6.7)	48.261	.000
N	22(36.7)	25(41.7)	56(93.3)		
Dental Hygienist					
Y	58(96.7)	44(73.3)	51(85.0)	12.810	.002
N	2(3.3)	16(26.7)	9(15.0)		

Table 6. Reasons for Dental Hygienists by Department of Researchers

Item	N(%)			x ²	p
	Early Childhood Education	Beauty Art	Dental Hygiene		
Observation of dental hygiene needs, data collection, dental hygiene judgment and nursing care	14(24.1)	10(22.7)	2(3.9)	34.960	.000
Assistance with care under the guidance of a dentist	7(12.1)	14(31.8)	5(9.8)		
Oral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health care claimants, planning and carrying out activities for health promotion, and other health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10.3)	8(18.2)	3(5.9)		
Professional personnel who can take preventive measures for oral health	10(17.2)	5(11.4)	12(23.5)		
Issuance of a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rough a national examination	19(32.8)	6(13.6)	21(41.2)		
Current medical article law lack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es related to dental hygienist work	2(3.4)	1(2.3)	8(15.7)		

IV. Discussion and conclusion

생애주기별에서 대학생들은 성인기의 전 단계로 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있으며, 구강건강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구강건강을

잘 지켜야 노년기에 이르러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11]. 그러나 윤현서[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기적 치과검진, 치면세마 및 구강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Table 1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정도가 치위생과 전공자의 경우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5.0%와 15.0%로 높게 나타났지만 미용예술 전공자의 경우는 '그렇다'가 21.7%, '매우 그렇다'가 0%로 구강보건관련 지식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는 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이들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의과 분야인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으로 업무 역할과 체계가 되어 있는데,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는 의료 현장에서 공생하며 협력하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으로 각각 이종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적 업무체계와 인력의 재구성이 필요성이 느껴진다[13].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의료기사법의 법적태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과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와 법적 외 업무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Table 3, 4). 김명희 외 등[14]의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 중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는 48.7%,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는 44.6%였으나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2학년 여대생의 경우는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는 91.7%,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는 90.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법적 외 업무 중에서는 김명희 외 등[14]의 연구에서는 임시치관제작을 56.8%가 법적인 업무라 대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90.0%가 응답하여 치위생과 전공자 중에서도 학년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학년 중에서도 인지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조산사의 경우는 유아교육과와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80%이상이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70% 정도 나타나 학과별로 의료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기사로 분류되는 직업군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치과기공사는 치위생과 전공자와 다르게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대부분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위생과 전공자들도 85.0%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교육과 전공자는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는 73.3%로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대답한 학생은 180명 중 153명이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치위생과와 유아교육과 전공자의 경우 1순위가 국가시험(실기시험, 필기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미용예술과 전공자의 경우는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진료를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Table 6). 이는 김서영 외 등[15]의 연구에서처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찬성의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치과위생사 업무의 본질이 의료행위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치과 진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는 의료기사법 안에서의 법적업무와는 차이가 있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치과위생사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치과위생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16,17].

보건의료기술이 변화하고 발전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의료기사를 하나의 법에 종속시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18], 법률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으며, 환자 측면에서도 편리성이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구강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19-22].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이므로 전체의 의견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3개의 학부 학생들을 설문조사하여 비교하였기에 향후 보건의료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REFERENCES

- [1] S. J. Shin, J. H. Son, Y. G. Choi, D. Y. Ryu, and D. S. Ma,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7, No. 1, pp. 25-30, March 2007.
- [2] <https://www.kdha.or.kr/introduce/relatedsite.aspx>
-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39&efYd=20191212#>
- [4] D. S. Lee and G. S. Han, "Problems to solve and job enlargement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8, No. 6, pp. 340-348, Jun 2018. <https://doi.org/10.17135/jdhs.2018.18.6.340>
- [5]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egislation.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85&chrClsCd=010102\(1973, August 17\)](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85&chrClsCd=010102(1973, August 17))
- [6] Y. S. Kim, and M. W. Shin,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8 No. 3, pp. 161-175, September 2008.
- [7] <http://www.kdha.or.kr/news/oldmagazine.aspx.pdf>
- [8] H. N. Kim, and G. H. Kim,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imilar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al Associ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Seoul, pp. 9-14, 2009.
- [9] <https://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410>
- [10] J. H. Jeong, S. J. Mun, S. S. Bae, S. K. Kim, and H. J. Noh,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legal scope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9, No. 2, pp. 207-219, April 2019. DOI : <http://dx.doi.org.oca.korea.ac.kr/10.13065/jksdh.20190019>
- [11] H. S. Yoon, Y. Y. Nam, H. A. Ryu, H. J. Kim, M. K. Lee, and J. H. Lee, "A surve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distr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1, No. 1, pp. 107-115, September 2013
- [12] H. S. Yoon, "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havior to happiness indexes among industri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1, pp. 313-321, November 2013. DOI : <http://dx.doi.org.oca.korea.ac.kr/10.5392/JKCA.2013.13.11.313>
- [13]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894>
- [14] M. H. Kim, Y. H. Lim, K. A. Lee, S. J. Kim, and Y. J. Kim, "Dental hygiene students' awareness of their legal scope and petition for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Vol. 6, No.1, pp. 36-42, October, 2018.
- [15] S. Y. Kim, H. M. Kim, and M. A. Jeong, "The opinions of non-health major students on registered dental hygienists to medical-personne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8, pp. 316-322, August 2019. <http://dx.doi.org.oca.korea.ac.kr/10.5392/JKCA.2019.19.08.316>
- [16]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30>
- [17] H. J. Lee, S. J. Shin, S. M. Bae, B. M. Shin,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2, pp. 409-423, February 2019. DOI : <http://dx.doi.org.oca.korea.ac.kr/10.5392/JKCA.2019.19.02.409>

- [18] T. H. Yoon.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ystems focusing o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Vol. 28, No. 2, pp. 128-135, April 2016. DOI : <http://dx.doi.org.oca.korea.ac.kr/10.18857/jkpt.2016.28.2.128>
- [19] J. W. Lee, and E. G. Park,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Law Review*, Vol. 38, pp. 393-412, May 2010.
- [20] J. H. Hyeong and Y. J. Jang,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7, No. 6, pp.1013-1024, November, 2017. DOI : <http://doi.org/10.13065/jksdh.2017.17.06.1013>.
- [21] H. G. Ryu,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8, No. 6, pp.1067-1077, November, 2018. DOI : <http://doi.org/10.13065/jksdh.20180092>
- [22] S. Y. Kim, G. R. Yoon, D. H. Kang, S. J. Kim, S. E. Lee, S. B. Jang, S. M. Hong, J. H. Hwang, and N. H. Kim, "Analysis of trade newspapers related to dental hygienists as healthcare professionals using language analysis technique: using R progra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7, No. 5, pp. 921-930, 2017.

Authors



Yang-Hee Hong received the Ph.D. degrees in Food and Nutrition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in 2010.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Beauty Art at Suwon Women's University.

Her is teaches skin care and researches cosmeceuticals.



Jung-Mi Lee received the M.S. and Ph. D. degrees in Duksung Women's University, Korea, in 2007, 2018, respectively.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Suwon Women's University.

Her teaching and research specialty is developing and evaluating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ogram for infant toddlers.



Hee-Sun Woo received the M.S. and Ph. D. degrees in Health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04, 2011, respectively.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ntal Hygiene at Suwon Women's University.

Her teaching and research specialties are in the fields oral health education and oral prophylaxis.